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65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공중보건직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보수 기준 변경	3

I. 개요

1.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65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30.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정원을 못 채우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은 더욱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중보건직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보수 기준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중보건직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관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단축하고,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그 한도를 삭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6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직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u>군사교육소집기간</u> 외에 3년으로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u>군사교육소집기간</u> 을 포함하여 2년으로-----.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직의사에게 <u>군인보수의 한도</u> 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직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제11조(보수 등) ①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u>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삭제>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점토의견

□ 공중보건과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등과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중보건과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임¹⁾.

- 공중보건과의사는 대부분 의료 취약지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지역주민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보건사업 및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배치기관별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단위 : 명)

배치기관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3,523	3,365	3,175	2,851	2,551	1,982
보건(지)소	3,041	2,901	2,716	2,414	2,156	1,661
병원선·이동진료반	27	24	25	30	25	16
국·공립병원	200	195	194	183	162	131
국가보건기관	67	61	57	55	60	60
응급의료기관 등	88	85	84	77	62	47
보건단체 복지시설	4	4	4	4	3	0
교정시설 등	96	95	95	88	83	67

자료 : 보건복지부

-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과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과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과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과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 의사 편입 인원이 2020년 1,309명에서 2026년 547명으로 감소하였고 이중 특히 의과의 경우 2020년 742명에서 2026년 93명으로 급감하였음.

<공중보건 의사 신규 편입 인원 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의 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소 계	전문의·인턴	일반의		
2020	1,309	742	397	345	201	366
2021	1,033	478	144	334	231	324
2022	1,048	511	352	159	206	331
2023	1,107	449	298	151	251	407
2024	709	249	203	46	185	275
2025	738	247	-	-	221	270
2026	547	93	76	17	224	230

자료 : 보건복지부

- 공중보건 의사가 주로 근무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공공의료의 최소 단위라는 측면에서 공중보건 의사 인력 부족은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공중보건 의사 편입 인원 감소는 상대적으로 장기인 복무기간, 업무 과중, 낮은 처우 및 비효율적인 배치 구조, 의사 국가시험 성별 합격자 비율, 현역병 입영 선호 현상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복무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 제7조와 「병역법」 제34조제2항2)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22일)³⁾을 제외한 3년으로 1979년 제도 도입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2)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3) 「병역법」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에 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953년 36개월로 확정된 이후 사회적 여건에 따라 꾸준히 단축되어 현재 육군·해병대, 해군 및 공군의 복무기간은 각각 18개월, 20개월 및 21개월임.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할 경우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이상임.

- 한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를 때 봉급·진료수당·가족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군인봉급표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제8조 관련)

보 수	공중보건의사의 구분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 급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는 사람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인턴 수련 1년 이수자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레지던트 수련 1년 이수자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레지던트 수련 2년 이수자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레지던트 수련 3년 이수자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대위 5호봉
가 족 수 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진 료 수 당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개정 2026. 1. 2.>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금액, 단위: 원)

계급 호봉	대위	중위
1	2,805,000	2,306,700
2	2,922,900	2,385,000
3	3,040,800	2,463,300
4	3,185,400	2,541,600
5	3,330,000	2,619,900

비고

6. 병: 이등병 750,000원, 일등병 900,000원, 상등병 1,200,000원, 병장 1,500,000원

- 참고로, 육군 병장 기준 월급(내일지원금 제외)이 2017년 216,000원에서 2026년 1,500,000만원으로 약 7배 증가하고, 내일준비금 최대 55만원을 합한 육군 병장의 월 최대 수령액은 약 205만원에 달하는 등 현역병에 대한 급여와 복지 수준도 대폭 개선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중보건의사 중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는 2년 이상 근무한 공중보건의사 경우 그 봉급⁴⁾은 중위 3호봉(2,463,300원) 수준으로 현역병(병장)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임.

□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개선 등에 따라 최근 의대생이 의사 자격을 획득한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대체하기보다 의대 재학 중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생 중 현역사병 입영은 지난 2022년 191명에서, 2023년 267명, 2024년 1,363명, 2025년 2,895명으로 급증하였음.

4) 봉급 외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과 월 2만원 내의 진료수당이 추가됨.

□ 이에 개정안은 공중보건의학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군사교육소집기관 외 3년 →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과 군인보수 한도를 삭제하는 등 보수 기준 변경을 통해 편입 대상자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공중보건의학사 인력을 확충하여 공중보건의학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 취약지역에서 제공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공중보건의학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보수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공중보건의학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공중보건의학사의 의무복무기간만을 단축할 경우 군법무관 등 전문자격에 기반한 다른 직역의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개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해당 개정안들에서 군의관 등 단기복무장교,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도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논의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공중보건역사의 교체주기가 빨라지게 되어 지역환자(만성질환·노인) 관리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고,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단독·소규모 근무는 숙련이 쌓이기 전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감독·협진·표준진료지침·원격자문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의무복무기간 단축으로 의무복무 부담이 줄게 되면 공중보건역사 지원·선발의 안정성이 개선되어 공중보건역사 편입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단축에도 불구하고 연간 편입 인원이 계속 감소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공중보건역사 현원이 감소하여 취약지 의료공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⁵⁾

□ 다음, 보수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군의관, 군법무관 등⁶⁾의 경우에도 보수에 있어 군인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다른 직역의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개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5)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의대생의 현역 지원 등에 따라 대체복무 의료인력자원 수가 변경되며, 군의관 편입 대상자 선발 후 나머지 인원이 공보의로 편입되므로 향후 공보의 편입인원 규모 산출은 불가능하나,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할 경우, 군의관·공보의 지원 증가가 예상되며, 공보의 실태 조사, 간담회 등 통해 구체적인 복무기간 단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6)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수 등)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수 등)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해당 개정안들에서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기준 변경에 대해서 담고 있어 그 논의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 둘째, 개정안에 따라 보수기준이 변경되어 공중보건역사의 보수가 인상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보수 기준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 재정 소요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동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현재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공중보건역사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은 보수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현시점에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대위 1,320명, 중위 1,980명 대상) 인건비(월급, 정근수당, 정액수당, 명절휴가비 포함)로 936억원⁸⁾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수당은 각 배치기관의 운영비⁹⁾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함.

7) 단, 군의관의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음.

8)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월급(대위 3,123,500원, 중위 2,243,000원)에 1.034배를 적용하여 2026년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 셋째,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적정 수준의 보수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여야 하나, 그 위임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하위 법령에서 이를 적정하게 정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또는 보수 기준 등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례를 함께 규정하여 의무복무기간 또는 보수 기준의 변경이 적용되는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3년에서 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2호,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공중보건의사 자원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개정안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지원을 확대가 예상되며 지역 의료공백 해소가 기대됨.

9) 예시로, 2026년 예산을 기준으로 마산병원은 공중보건의사 7명에 대한 수당 8,400만원, 목포병원은 공중보건의사 6명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 7,200만원을 배정함

- 한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군인 보수 한도 규정은 병역의무이행자 간 상대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유사 직역(군의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과의 병역제도 및 보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병무청

-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소요 증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현행 의무분야 입영대상자는 현역 장교를 우선 선발하고, 미선발자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므로 복무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는 의무장교와 자격요건, 선발방식 및 복무기간이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군인보수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 복무기간은 공보의 복무를 선택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법적 신분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보수체계를 적용하여 공공부문 의사 인력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한한 의사협회

-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의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함.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및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을 제고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와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직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공중보건의사 확보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